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7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종사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추가	3

I. 개요

1.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방임·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정서적·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종사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현행법 제32조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 6. (생략) <u><신설></u>	제32조의2(결격사유)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u>

현행	개정안
7. (생략) <u><신설></u>	<u>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7.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u> 1.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2. <u>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u>

현행	개정안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2조의2제1항----- -----. -----제32조의2제1항제7호----- ----- -----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 및 제31조 등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복지법」 제31조²⁾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³⁾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됨.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종사자 채용 관련 결격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 현행법 제32조의2⁶⁾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결격사유로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⁷⁾에서는 사회복지시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의 장⁸⁾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성폭력범죄의 경우 10년, 직무 관련 범죄는 5~7년, 일반 범죄는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간의 제한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범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8)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사람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고용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⁹⁾에서는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¹⁰⁾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현행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

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참고자료] 개정안의 결격사유 추가 관련 법률 참조

현재 장기요양기관 내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자인 노인들의 경우 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확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장기요양기관 내 학대 발생 유형별 현황(2020년-2023년) >

(단위 : 건)

유형별	2020	2021	2022	2023
신체적 학대	36	44	49	36
정서적 학대	5	11	3	8
성적 학대	31	50	46	94
경제적 학대	48	5	4	4
방임	60	70	125	80
중복학대	303	317	352	315
계	483	497	579	537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결격사유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의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종사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시설장 및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기존 법령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종사자 결격사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좀 더 명확히 규정하면 노인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타 법령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채용 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자격 제한이 필요함.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

법」 제39조의17의 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자료] 개정안의 결격사유 추가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하는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하는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하는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하는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